

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5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0. 07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08.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폐지이유

-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. 8. 29. 「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」를 제정하였으나,
- 지난 30년간 공영개발사업 중 택지조성사업은 실적이 없고, 공단 조성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은 미래산업과 「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」로 운영하고 있으며,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,
- 2019. 1. 상·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수요가 생길 경우 자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」를 폐지함

4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19-1184호
1) 예고기간: 2019. 9. 3. ~ 2019. 9. 23.(20일간)

2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5. 본 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 5조에 따라 1989. 8. 29. 제정하였으나, 현재까지 공영개발사업 중 택지조성사업은 실적이 없고, 공단조성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은 「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」로 운영하고 있으며, 또한 상·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(2019. 1)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수요가 생길 경우 자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

9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